

문화예술강좌 운영세칙

제 정 2017. 01. 2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문화예술강좌(이하 “문화예술강좌”라 한다) 운영에 따른 원칙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좌 개설) 문화예술강좌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향유 능력의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성남문화재단 내외 인적, 물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설한다.

제3조(수강료 책정) 유료로 실시하는 교육의 수강료는 타 문화예술 교육 기관 등과 비교하여 대표이사가 책정한다. 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강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수강취소 및 환불) 수강생이 “별표 1”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강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 ① 수강료 납부 후 강좌 시작 하루 전까지는 수강료를 전액 반환한다.
- ② 강좌 개시일 이후 환불은 “별표 2” 환불기준에 의거하여 계산된 금액을 환불한다.
- ③ 재단이 강좌를 폐지할 경우 수강료는 전액 환불한다.

제5조(강좌의 폐지) 재단이 강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강좌를 폐지할 수 있다.

제6조(강사 채용 및 강사풀 운영) ① 강사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개 모집 없이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1. 강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공개채용의 지원후보자가 미달될 때
3. 문화예술 및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 지명도와 권위가 있는 자로 “별표 3”의 2급 강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재단은 교육인력활용을 위해 강사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강사풀은 연 1회 분야별로 정기모집을 하며, 신규강좌 신설 등 필요시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④ 강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 심사 과정을 거치며, 인터뷰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강사풀에 등록된다.

⑤ 강사풀에 등록된 강사에 한하여 관련 분야 강좌 진행 시 별도의 전형 없이 우선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강사자격기준) 각 급수별 강사채용 자격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8조(강사료 지급기준) 문화예술강좌 강사의 강사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강사의 경력과 타 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강사료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판단,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강좌 평가) 재단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하여 강좌 종료 후 각 강좌 평가를 실시하고, 강좌 평가 항목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 ①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강좌평가 이외에 강사평가 등 별도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고, 반영비율을 정한다.
- ② 강좌평가 결과에 따라 강사 재계약(약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0조(증명서 발급) ① 재단 문화예술강좌에 출강하고 있거나, 출강했던 강사의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4”에 의한 출강확인서를 발급하며, “별표 5”에 의거 발급대장을 별도로 관리한다.

② 재단 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의 강좌 수강과 관련한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6”의 강좌 수강 확인서를 발급한다. 단, 이수기준은 강좌 전체 차시의 70% 이상 일 경우에 한한다.

③ 재단 문화예술강좌 중 일부교육과정은 이수한 수강생에 대해 “별표 7”의 수료증을 강의 종료 후 발급할 수 있다. 단 이수기준은 강좌 전체 차시의 70% 이상 수강, 수료과제 제출일 경우에 한 한다.

제11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강의시간 중 강의실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2. 재단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는 행위
3. 재단의 시설, 물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재단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5. 강좌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권한을 남용한 부정한 행위
6. 재단의 강사로서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② 강사가 1항 각 호 1에 행위를 하였을 때 해촉(약정을 파기) 할 수 있다.

제4조 관련 [별표 1,2]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제6,7,8조 관련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제10조 관련 [별표 4,5,6,7]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불신청서

결재	담당	부장

강좌명			
수강자		연락처	
환불계좌	예금주		
	환불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환불사유			
상기 사유로 수강이 불가하여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표 2]

환불기준

강좌횟수	사유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2회 이하	1회 수강 후	환불 금액 없음	잔여강좌란 강좌의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환불 신청시 이후에 남은 강좌를 말한다.
3회, 4회	잔여 강좌 횟수 2회 이상	2회 수강료 환불	
	잔여 강좌 횟수 1회	환불 금액 없음	
5회 이상 8회 이하	잔여 강좌 횟수 3회 이상	잔여 차시별 금액 계산한 합산 금액 환불	
	잔여 강좌 횟수 2회 이하	환불 금액 없음	
9회 이상 14회 이하	잔여 강좌 횟수 4회 이상	잔여 차시별 금액 계산한 합산 금액 환불	
	잔여 강좌 횟수 3회 이하	환불 금액 없음	
15회 이상	잔여 강좌 횟수 5회 이상	잔여 차시별 금액 계산한 합산 금액 환불	
	잔여 강좌 횟수 4회 이하	환불 금액 없음	



[별표 3]

문화예술교육 강사료 지급기준

구분	기 준	강사료	
		정액제	비율제
특별 강사	① 명사급에 해당하는 저명인사, 학자, 기업인 및 관료 원로 문화예술인,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인 ② 문화예술 관련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예술인)가 고유한 콘텐츠에 의해 교육공연, 교육전시, 체험형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경우, 뛰어난 대중적 호응이 있는 문화예술관련 단체나 개인일 경우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례비 책정 및 지급	
1급 강사	① 해당 문화예술분야에서 15년이상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그에 준하는 지명도, 경력, 수상 등이 인정되는 문화예술인 및 전문 강사 ② 대학(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최고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수강료의 50%~60%
2급 강사	① 해당 문화예술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그에 준하는 경력, 수상 등이 인정되는 문화예술인 및 전문 강사 ② 대학(전문대학) 전임강사 또는 조교수 ③ 판·검사·변호사·기업인·컨설턴트 등 해당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 ④ 3,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공무원	- 최고 1시간 1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80,000원	
3급 강사	① 해당 문화예술분야에서 7년 이상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그에 준하는 경력, 수상 등이 인정되는 문화예술인 및 전문 강사 ②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로 5년 이하 3년 이상 활동으로 인해 그에 준하는 경력, 수상 등이 인정되는 문화예술인 및 전문 강사 ③ 대학 시간강사, 겸임, 초빙 교수 ④ 5, 6급 공무원 중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우	- 최고 1시간 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수강료의 50%
4급 강사	① 해당 문화예술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으로 인해 그에 준하는 경력, 수상 등이 인정되는 문화예술인 및 전문 강사 ② 해당분야 비전공자 교육 경험 3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관련 경력 3년 이상 현업에 종사한자	- 최고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수강료의 50%
5급 또는 보조 강사	① 해당 문화예술분야에서 3년 이하의 문화예술인 및 전문 강사 ② 강좌진행 시 보조 진행자 (실기 및 강습 보조)	- 최고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출강 확인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소 :
총 강 좌 수 :
총 시 수 :

위 사람은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의 강사로 출강하고 있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세부 내역서 1부.

년 월 일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별표 5]

출강확인서 발급대장

일련번호	강사명	생년월일	주 소	강좌명	출강기간	비고



강좌 수강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강좌명

수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강시간

회(총 시간)

위 사람은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한
<강좌명>을
수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별표 7]

수 료 증

성 명 : ○ ○ ○

교 육 과 정 : <강좌명>

교 육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시간)

위 사람은 성남문화재단이 진행한 <강좌명>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